

## 5.1.36 산학협력단공용장비지원센터운영규정

제정 2022. 09. 2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 공용장비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용장비 활용, 지원 및 관리
2. 공용장비를 활용한 산학협력 기술 및 교육 지원사업
3. 공용장비 지원에 의한 수익사업
4. 그 밖에 공용장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센터장 및 직원) ①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한다.

② 센터에는 연구원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,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그 기능을 겸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공용장비의 설치 방법 및 활용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장비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공용장비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공용장비를 활용한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공용장비 활용, 지원,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용절차) ①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사용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와 장비사용 서약서(별지 제2호서식)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에 접수된 장비사용 신청서의 기재된 내용을 검토 후 장비 사용을 허가한다.

③ 사용자는 장비사용을 완료한 후 장비운영일지(별지 제3호서식)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장비 사용자는 사용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장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⑤ 장비에 대한 파손은 사용전의 상태로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용자에게 변상 조치하도록 한다.

제6조(사용시간) 장비의 사용은 정규 근무시간 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장비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야간 및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허락을 받아 하며 장비 사용료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공용장비 사용장소) 공용장비의 사용은 장비보유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장비보유기관 내에서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장비운영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장비 반출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.

제8조(장비사용료) ① 장비사용료는 선수납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장비 사용료의 산정은 재료비, 사용단가, 사용량 등으로 구성한다. 장비사용료에 분석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③ 센터는 본 센터에 자료 분석을 의뢰하는 자료부터 자료의 관리, 분석 및 판독 등에 따른 실비를 사용료 및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④ 센터는 장비사용료 징수 후 영수증을 발급한다.
- ⑤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장비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  - 1. 초당대학교와 관련기관 및 산업체간의 연구용역 등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
  - 2.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장비를 사용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용료 감면 제도에 따른 경우
  - 3. 가족회사로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가 등급에 따라 장비사용료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
  - 4. 그 밖에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사용책임) ① 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해당 장비의 고장, 파손 및 망실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지며, 교육 연구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진다.

- ② 장비운영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당해 장비의 현재가격에 상응하는 가액의 “책임보험증권”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재정)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산학협력단 예산, 센터 공용장비 사용료, 국가와 지방단체의 지원금, 참여기업의 공동부담금, 본교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
- ② 재정의 관리와 회계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.

제11조(기타)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## 장비사용 서약서

장비사용자 및 소속 업체(기관) 대표는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용장비지원센터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며,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장비사용자 및 소속 업체(기관)의 장이 책임을 지고 피해물의 복원조치(원상복구) 또는 손해배상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장비사용자는 장비 사용 시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한다.
2. 장비사용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장비의 기능 및 형상 등을 임의로 변형하지 않는다.
3. 장비는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,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.
4. 임차 또는 사용 중인 장비는 장비사용자만 사용하며, 다른 회사 등에 임대하지 않는다.
5. 장비 사용 중 소모품을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.
6. 장비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(장비의 훼손, 도난, 감전, 화재 및 기타 사고)에 대한 책임은 장비사용자에게 있으며, 즉시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한다.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한다.
7. 공용장비지원센터가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,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  - 실험실을 장시간 문을 열어 둔 채 비우거나 외출하지 않는다.
  - 사용한 장비를 원래의 비치장소에 정리정돈 하고 퇴실한다.
  - 사용신청 및 승인된 장비 이외의 장비를 함부로 조작(훼손) 또는 만지지 않는다.
  - 실험실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지 않는다.
  - 실험실 내에는 음식물 등의 반입을 하지 않는다.
8. 장비사용자의 사업장 또는 연구실 등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의 이동은 장비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며,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(장비의 훼손, 사고 및 인체 상해 등)의 책임은 장비사용자가 진다.

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

장 비 사 용 자 (인)

업체(기관)대표 (인)

공용장비지원센터장 귀하



## 장비등록 신청서

연구장비	한글명	기계명 (한글명)		
	영문명	기계명 (영문명)		
	ZEUS 등록번호	XXXX-XXXX-XX-XXXXXX	교내자산관리 번호	XXXXXXXXXXXXXXXXXXXX
모델명	모델명	장비구분	제작장비/구매장비	
취득일자	장비 취득일자	취득금액	장비 취득금액	
장비시설구분	주장비/보조장비	활용범위	공동활용서비스/ 공동활용허용	
장비책임자 소속	장비 책임자 소속	장비책임자	장비 책임자 성명	
장비설치장소	장비 실제 설치 장소			
장비 운영기관	담당자	장비운영기관 담당자	연락처	담당자 연락처
	오퍼레이터	장비 오퍼레이터	연락처	오퍼레이터 연락처
<p>위 장비를 공동 활용 장비로 등록하고자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○○○○○ :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 margin-left: 50px;">공용장비지원센터장 귀하</p>				



